

#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이유서

|      |    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152 |
|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1992. 11. 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 정 이 유

- 주차장법(91. 12. 14 법률 제4437호)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 2. 주 요 골 자

- 주차장 설치권한 : 시장 → 시장 및 구청장
- 주차요금 : 공영-시 조례규정 적용, 민영-신고요금
  - 1급지(도심지역) : 30분마다 500원(1일 주차 6,000원, 월 75,000원)
  - 2급지(외곽지역) : 30분마다 200원(1일 주차 2,400원, 월 30,000원)
- 주차장시설 및 기준
  - 바    닥 : 아스팔트 포장 또는 콘크리트
  - 주차전용 건축물 : 대지 45㎡이상, 용적률 1500%이하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건폐율 9/10이하
- 구청장의 노상주차장 설치 :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
- 파징금 처분 : 50-250만원
- 파태료 처분 : 40-100만원
- 시행일 : 93. 1. 1

## 3. 관 계 법 령

- 주차장법 제7조 내지 제12조 및 동법시행령